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운용지침

1. 목적

이 운용지침은 당 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 (1) “협력업체”라 함은 당 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 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협력업체 풀(Pool)’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 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Pool)’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 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Pool)’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 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

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당 사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해야 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해야 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해야 한다.

(3)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 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3) 당 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5) 신규 업체 등록 기준 및 절차

1) 등록 기준

당 사가 제정한 '협력업체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정해진 절차(접수 및 최초평가, 선정)를 거쳐 신규 업체로 등록 된다.

2) 용어의 정의

- ① 접수: 제반 구매조건을 만족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과로 접수하는 것
- ② 최초평가 : 견본 평가 및 실사 평가 또는 서류 및 이력평가 중에서 한 방법 이상을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
- ③ 선정: 견본 평가 및 실사 평가 또는 서류 및 이력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

3) 접수 기준

아래의 3개의 항목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접수 한다.

- ① 정부에서 인정하는 각종 규격에 합격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 ② 품질 취득 업체에 1년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③ 제반 구매조건을 만족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업체

4) 최초 평가 방법

아래의 3개의 평가 방법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 ① 견본 평가: 협력업체로부터 발송된 견본 및 평가 자료를 품질관리부서에 평가 의

되 하며, 품질관리부서는 구매 시방서 또는 도면, 검사기준에 의거 평가를 진행

- ② 실사 평가: 당사의 공급 품목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행하며,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협력업체평가서에 의해 평가를 실시
- ③ 서류 및 이력평가 : 국제규격 등 (ISO9000,ISO14001) 인증 업체 관련 자료 평가 및 국가규격(KS, JIS, DIN, BS등) 인증 업체의 평가, 대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제품에 대한 비교 평가와 과거의 관련 평가 또는 보고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동일 물품을 ISO품질 인증 취득 업체에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실적 관련 자료의 평가

5) 선정 기준

- ① 견본 평가 결과 당사 구매 시방서, 도면 또는 검사 기준에 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품질 부서에서 통보한 검사 성적서에 의거 협력업체로 선정 한다.
- ② 실사 평가 결과 총평점이 60점 이상이면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총평점이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개선 및 대책에 따른 품질개선 대책서를 제출토록 요구 하고, 3개월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이되면 협력업체로 선정 한다.
- ③ 서류 및 이력평가 결과 인증 업체 관련 자료와 인증 업체의 평가와 대상품과의 비교 및 과거 평가 또는 보고서, 인증 취득 업체에 1년 이상 납품 실적 있는 업체의 실적 관련 자료 평가가 충족된 경우 협력업체로 선정 한다.

(6) 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4. 협력업체 운용 기준

(1) 등록 유지

- 1)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신규 업체로 등록된 경우 협력업체 등록카드(또는 풀(Pool))에 등재해 관리 한다.
- 2) 매년 업체 실사를 계획하며 정기적으로 실사해 평가 한다.

3) 등록이 해지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 30일 이전 해지 통보가 없으면 매년 1회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재협약을 체결한다.

(2)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당 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및 전자매체(홈페이지 등) 등에 15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3)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 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등록취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업체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협력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업체를 재 발굴 하도록 한다.

- ① 납기 지연 및 품질 문제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증대하여 긴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② 신규 협력업체로의 발주 또는 신규 품목의 초기 발주로 협의, 지도를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파산 또는 부도가 발생 혹은 발생 가능 판단된 업체
- ④ 부적합이 발생되어 당사의 제품생산 및 설치공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업체
- ⑤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공급제한 및 담합을 주도한 업체
- ⑥ 실사평가 기준에 미달된 업체

3)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당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용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해야 한다.